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고 찬 양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3-72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30일

발 의 자 : 고찬양, 전철규, 최세진,
김순옥, 김지수, 홍재희,
강선영, 박성호, 이충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년의 구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3조)

나. 청년참여기구의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제11조)

다. 청년참여자문회의 운영 및 기능을 규정(안 제12조 ~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나. 협조부서 : 일자리정책과

다. 입법예고 : 23. 5. 31. ~ 6.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청년은 사회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② 청년참여 활성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문제해결에 기반을 하여 운영한다.
2. 청년의 권익증진,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
3. 청년참여 활동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한다.
4. 청년참여 활동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청년참여”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의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청년참여기구”란 청년의 사회참여 역량을 개발하고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 되는 기구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참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참여 활성화) 구청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홍보, 인력양성
2. 정책 및 사례 연구 조사
3. 청년의 민·관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역량 개발 등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기구(이하 “청년참여기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청년참여기구의 명칭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청년참여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단체, 이해당사자, 청년 전문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년참여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년참여기구에서 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참여기구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에서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청년
3. 구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년
4. 구 소재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

⑦ 다음 각 호의 청년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청년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청년
3. 다른 청년참여기구 위원으로 위촉 중인 청년(서울시 청년참여기구는 예외로 한다)

⑧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기능)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2.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3. 청년 역량 강화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5. 청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 건의

제8조(청년참여기구의 구성) ① 청년참여기구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며,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③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④ 청년참여기구는 성별·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위촉한 날로부터 해당년도 말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해당년도 말까지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및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범죄에 연루되는 등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청년참여자문회의) ① 구청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년 참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청년정책전문가, 청년단체활동가, 청년참여기구의 추천자를 포함하여 관련 공무원 등 12명 내외로 구성하되, 청년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자문회의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또는 청년참여기구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자문회의 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참여기구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활동 지원
2. 청년참여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그 밖에 자문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4조(홍보) 구청장은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제17조(청년문화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